

제 8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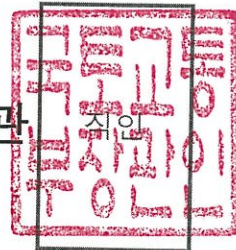
법인 설립(변경)허가증

1. 법인 명칭: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7, 2-5층 (신당동, 송죽빌딩)
3. 대표자
○성 명: 윤형주
○생년월일: 1947.11.19.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2길 42, 2층(서초동)
4. 사업 내용: 무주택 영세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건축활동
5. 허가 조건: 불임 참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변경 허가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준수사항

1. 「민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4)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라.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 변경 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1995.09.13.	법인 설립허가(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주거복지기획과 김수영(인)
2010.11.25.	명칭 변경(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주거복지기획과 김수영(인)
2011.01.26.	소재지 변경(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6 고려빌딩 6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7, 2-5층 신당동 송죽빌딩)	주거복지기획과 김수영(인)
2015.05.20.	대표자 변경(정근모 → 송영태)	주거복지기획과 김수영(인)
2017.11.03	대표자 변경(송영태 → 윤형주)	주거복지기획과 김수영(인)

설립허가조건

○ 본 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나.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법령·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3회 불응하는 경우

다. 수익사업의 비종이 목적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